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82
----------	-------

발의연월일 : 2026. 5. 4.

발 의 자 : 윤영석 · 박덕흠 · 구자근

김대식 · 박성훈 · 조경태

김태호 · 우재준 · 곽규택

조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인해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SNS·메신저 등을 통한 도박 유입 경로 또한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은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중독 예방

교육은 체계적·의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육 실시 여부 및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①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이하 “청소년도박중독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도박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 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은 청소년도박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

영하여야 한다.

④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⑤ 교육계획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 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4(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u> ① <u>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u> ② <u>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 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이하 “청소년도박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도박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u> <u>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u> <u>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u> <u>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u>

③ 교육부장관은 청소년도박중
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
도록 한다.

⑤ 교육계획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 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
육부령으로 정한다.